1. 특허대상 요건

----- < 심사방향 > --

특허보세구역 신청서류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 보세창고 설치 · 운영 특허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조항	내용	평	가
§ 5①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의 특허(갱신)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였는지 여부 ※ 특허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중나목, 라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확인사항의 확인을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2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다. 임대차(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충족	미충족
	< A사 가이드라인>: 신청인 소유의 건물, 토지가 아닌 경우 해당 소재지에 대한 자격 등 구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등) ※전대차인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С '	
	라.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서(승인서) 또는 등록증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 관계서류		

조항	내용	평	가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심사 가이드라인> 소재지 구역내 사무실, 주차시설, 휴게공간 등 비보세구역과 보세구역의 경계 명확히 구분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심사 가이드라인> 특허장소에 대한 운영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확인(당연사항)		
§5② §7②	법 제17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수수료 납부여부 <특허(갱신)신청 수수료> : 45,000원	충족	미충족
§53	특허 운영인에 대한 확인사항 이상 유무 <확인사항> 1. 당해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에 한함) 3.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 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확인방법> 제1호의 사항은 세관에서 직접 조회, 제2호 및 제3호의사항은 현장 확인 시 해당증명서 확인	충	미충족

조항	내용	평	가
§2 §6③	특허(갱신) 신청서상의 장치물품의 종류와 수용능력 설정의 적정 여부 <심사 가이드라인> 1. 장치물품 종류 이 위험물, 농산물 및 식품류 등 장치목적 적합성 2. 수용능력 설정 이 수용능력 설정여부, 설정방법의 타당성 등	충족	미충족
§13①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 해당 여부 ※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 특허할 수 있음 <자가용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없는 물품> 1.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2.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물품	충족	미충족
§15①	공동보세구역의 특허요건<공동보세구역 특허요건>1. 2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물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3.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5.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 광호텔용품센타 등이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6.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비축 시설에 관련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충o	미충족

조항	내용	평	가
조항 \$15② ~ ®	내용 공동보세구역의 경우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과 관리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사 가이드라인> ○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보세구역 도면 등으로 확인) ○ 보세구역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였는지 여부(보세구역 도면 등으로 확인) ○ 출입구 등에 신청인별 장치영역을 표시한 안내	평 충 주	마충족
~ (8)	 당입구 등에 신청인별 상지영역을 표시한 안내 판 설치 여부 O 신청인별 보세사 채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시설・장비 보유 여부 O 기타 자가용보세창고 특허요건 충족 여부 O 외부침입방지, 소방・전기시설 등 보세화물 안 전관리 및 출입자 통제시설 적정 여부 		

2. 운영인의 자격요건

─ < 심사방향 >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 및 체납자 여부 등 운영인의 자격요건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조항	내 용	평	가
§3 ①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충족	미충족
§ 3①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충족	미충족
§3①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특허받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 감정평가서(2억원 이상) <심사 가이드라인> ○ 개인의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표준액(건물)을 통해 확인가능 *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 원시설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	충족	미충족
§3 ① 4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보세사를 1인 이상 관리자로 채용 <심사 가이드라인> : 관리자란 화물관리인 또는 화물관리책임자를 의미하며, 관련 서류에 의해 운영인의 소속직원임이확인되어야 함(외주용역, 파견 등 제외)	충족	미충족
§3 ①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평균 B등급 이상	충족	미충족
§ 3①6	위험물품 등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증 등을 받아야 한다.	충족	미충족

3. 재무건전성

----- < 심사방향 > ----

보세창고 운영인이 관세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 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조항	내 용		;	점수	:	
§3①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특허받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심사 가이드라인> ○ 자본금에 따른 평가점수 상이적용 - 구분 50억 이상 3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2억 이상 영업용 5점 4점 3점 2점 1점	5	4	3	2	1
시행령 §189.4	부채비율 <심사 가이드라인> ○ 특허신청일 직전년도(직전년도가 없으면 최근년도) 세무서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등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재무상태의 적정성 확인 ○ 부채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상이적용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100% 미만 미만 이상 이상 미만 이상 이상 이원 점점 용점 10점 용점 6점 4점 2점 ※ 자본총계가 0보다 작은 경우 0점으로 처리 ※ 신청인이 당해년도 업체설립 등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동 항목 평가 생략 - 동 항목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총 9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 산출	10	7용	<u>미평</u>	4	점)
§10①8	해당 창고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정입용	5 (10)	4 (8)	3 (6)	2 (4)	1 (2)

─ < 심사방향 > -

보세화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었는지와 외부침입,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물리적 시설 의 적정성 및 물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세화물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조항	내 용	평가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보세사를 1인 이상 관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충족		미충족		족
	<	5		3		1
	구분 1명 2명 3명이상					
§ 3①4	<u>영업용</u> 1점 3점 5점					
	※ (자가용) 보세사 1명이상 근무 : 5점					
	o 보세사 보세화물 취급경력에 따른 상이적용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u>1</u>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보세화물 취급경력 인정 : 수출입화물시스템 의 보세사 근무기간, 업체제출 사무분장 등 보세사가 다수 근무하는 경우 최고 경력자를 평가대상으로 함 	5	4	3	2	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 내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한다.					
§10①1 §14①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경우,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한다 자동화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 산출 영업용보세창고 고내면적별 평가점수 상이적용 	Ž	중족	1	미충	족

조항	내 용						평가			
	업업용 	1000㎡이상 3점 미흡 1점 네창고는 신청	2000㎡이상 5점 보통 2점 덕면적의 적정	4000㎡이상 8점 적정 3점 성성 심사	8 (3)		5 (2)	3 (1)		
§10①2	컨테이너 트리 부지가 있어 없는 창고의 회차하기에 - 컨테이너 500m²이상 5점 - 일반 차량	레일러가 주경 야 한다. 다면 경우 화물을 충분한 부지: 드라인> 화물 반입이 450㎡이상 400㎡ 4점 3 이용 화물반입	차하고 회차 나, 컨테이너희 전재한 차령	하기에 충분한 화물의 반입이 량이 주차하고 다. 500㎡이상 왕 350㎡미만 1점	5	4 3	3 2	2 1		
§10 ₃	방화성이 있 가진 재료로 <심사 가이 기준 충족 : (예시) ① 콘크리트 ① 조립식편	고 외부로부 구축되어야 드라인> : 재료 사용 여 , 석재, 벽돌, 난넬 등 : 난연1	터 침입이 0 한다.(건축허 안전(내화성,	점), 3급(1점)	충	족	3	충족		
§ 10 ① 4	물의 보관에 <심사 가이 건축물의 용 17.공장, 18	적합하여야 드라인> : 용도로서 건축 .창고시설, 19	한다. 특허보세구 법 시행령 [하는 보세화 역에 적합한 별표1에 따른 당 및 처리시 당하여야 함	충족		-	충족		
§10①5	건물의 바닥· 하여야 한다	•	클크리트, 아스	스팔트 등으로	충	족	-	충족		

조항		내				평 /	7		
§10 ① 6	해당 건물과 장에 침수방지 적정시설이 실	건물의 주변 기를 위한 비 설치되어 있 ⁽	배수구 또는 어야 한다.	배수펌프 등	5	4	3		1
	10m이대 1 5점	5m이내 20m 4점 3	점 2점	1점					
§10 ¹ 7	 ④ 상시 경비체 ⑤ 출입자 및 ① 출입구 경 출입자(차 ⑥ 출입차량 	야 하며, 상 상비를 갖추여 보라인> : 변 사후관리가 기 수요건) ①~(철조망 건물 전지역 조명 서 사각지대 요 등, 위험물 창고 제 또는 보안업 출입차량 통기 비실 운영 또 량)통제 통제를 위한 치 는 열감지선	시 녹화 및 어야 한다. 비인가자의 나능한지 여부 ④항 모두 충 둘레 전부 설치 성이 CCTV 설 기 고내 제외) 레 경비위탁(무인 테시설 는 보안업체 등 보안업체 설치	기록보관이 출입에 대한 를 심사 즉 시 치 기계 기탁 포함 기계 기탁으로 등제시설 설치	충 15	5족	0	미 <i>충</i>	· · ·
	모두충족	2개항 충족	1개항 충족	모두 미충족					
	15점	10점	5점	0점					
	(사후관리 필① 출입자(차량② 녹화 및 기③ 보세구역	비 구축	충족			미충족			
		(사후관리 점수요건) 녹화기록을 녹화일로부터 30일 이상 보존, 출입자 식별가능 장비 보유(사후관리)						기록	
	녹화.			화소수	7		5		3
			200만 이상 100만		С	CT'	<u>غ</u>	화소	수
	7점 5	점 3점	8점 6	점 3점	8		6		3

조항	내 용	평가
	기타 장치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①9.	 <심사 가이드라인> 물품의 종류별 보세구역 요건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시설 요건 충족 여부 ○ (소방)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최근1년 이내 발행된 것) 또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건축물) ○ (전기) 정기검사필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 ○ (특수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11조 ○ (세관장 인정 시설요건)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4조제2항제2호(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등) 등 세관장이 해당 보세구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충족 미충족

4-2. 보세구역 관리역량(장비부문)

----- < 심사방향 > ---

보세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반출입신고 및 화물취급 장비 보유여부 심사

조항	내용							-	평기	ŀ	
	화물: 추어(※ ㅈ	관리업무 야 한다. 나가용 보	항고는 화물 를 위하여 세창고는 비 보유 여	필요한 정 창고 및 취	상비 및 [,]	설비를 갖					
	반출 (상: (냉: (건 E □ T	온창고) 7 동·냉장 [:] 테이너 전 I게차 5대 타물 상하	드라인> 배고관리시: 지게차 2대 창고) 지게 !용 보세창 배 이상, 화 차 및 이동 2대, 엠티핸	이상 차 3대 이 고) 물운반차량 을 위한	량 10대 크레인 5	대 이상	אָלַכּי	충족		미충	.족
§10 ^⑤		구 분	창고별 화물	관리 필수 시설	설 및 장비 :	가이드라인					
	상온	지게차	□2대이상(10점)	□1대 (8점)							
	냉장 냉동	지게차	□3대이상(10점)	□ 2대(8점)	□1대(6점)						
		리치스테커 (엠티핸들러 포 함)	□3대이상(3점)	□2대(2점)	□1대(1점)						
		지게차	□5대이상(3점)	□ 3~4대(2점)	□2대(1점)	□1대(0.5점)	10	8	6	4	2
	CY 전용 운반차량 창고	□10대이상(2점)	□ 7~9대(1.5점)	□4~6대(1점)	□1~3대(0.5점)						
		크레인	□5대이상(3점)	□ 3~4대(2.5점)	□2대(2점)	□1대(1점)					
		야드샤시	□10대이상(2점)	□ 7~9대(1.5점)	□4~6대(1점)	□1~3대(0.5점)					

4-3. 보세구역 관리역량(내부통제부문)

── < 심사방향 > ──

보세화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자율적인 화물관리능력을 제고

조항	내용	평	가
§10②	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 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 3. 대장 기록 체계 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 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 보세창고 내부통제시스템(화물관리규정) 가이드라인(붙임1) 참조	충	미충족

5-1. 주변 환경요건(물동량 요건)

--- < 심사방향 > -

보세화물 물동량 증감 추이를 고려하여, 보세창고 난립 방지

조항	내용	평가		
조항 §10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관할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 가이드라인> (수출입물동량 기준 - 예시) -(대상) 수입·반송·환적화물 -(기준) 관할구역내 동일종류' 영업용보세창고의 반입실적(톤) *(동일종류) 상온(일반), 냉장·냉동, 활어, 위험물, 야적전용, 탱크, Silo 등 (영업용 신규 특허 - 예시) ①(특허기준) 관할내 동일종류 영업용보세창고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최근 1년 물동량이 90% 이상인 경우 신규특허 가능 ① 산출기준 [최근 1년간 물동량 / (b+c)] —(최근 1년간 물동량 / g업용보세창고 면적합계 - b: 현재일 기준 관할 내 동일종류 영업용보세창고 면적합계 - c: 신규특허 신청한 영업용보세창고 면적	평 충 축	가 미충족	
	© 적용 예시 [면 적] a: 10,000㎡, b: 15,000㎡, c: 1,000㎡ [물동량] - 최근 1년간 수출입물동량(톤): 1,500,000 - 전년말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톤): 1,000,000 [결 과] 신규특허 가능 - 분자: 1,500,000 / (15,000 + 1,000) = 93.8 - 분모: 1,000,000 / 10,000 = 100 - 결과: (93.8 ÷ 100) × 100 = 93.8 ≥ 90 (참고) 신청업체 특허 이후 추가 특허신청이 있는 경우(신청면적 1,000㎡), 신규업체 특허는 불가 (b=16,000, 산식계산시 88.2%로 90% 미만)			

조항	내용	평가
	😑 유의사항	
	- (겸용보세창고) 면적 비중이 높은 화물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해당 보세창고의 전체 면적을 적용 * (예시) 위험물 1.000㎡, 일반화물 2,000㎡인 경우, 일 반창고로 분류하고 보세창고의 면적은 3,000㎡로 산출	
	(영업용 특허 갱신 - 예시) - 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보세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보세화물* 반입물량**이 최근 2년 평균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할 것)	
	* (보세화물) 해당 창고의 수입, 반송, 환적화물의 반입신고 기준 ** (반입물량) 창고 유형을 감안하여 건수 또는 중량 적용하여 계산	
	(물동량요건 적용제외) 세관장이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세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2.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 또 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 4. 동일세관 관할내에서 창고소재지를 단순 이 동(변경)하는 경우 5. 본부세관별로 필요한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 (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 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내에서	

5-2. 주변 환경요건(보세구역 위치)

< 심사방향 > --

보세구역의 위치가 화물감시단속상에 지장이 없는 지 확인

조항	내 용					평가						
	<심사 가이드라인> 세관으로부터 거리(최단거리) 측정											
시행령	구분	10Km이내	20Km이내	40Km이내	60Km이내	60Km이상		5	4	3	2	1
§189.4.	영업용	5점	4점	3점	2점	1점		(10)	(8)	(6)	(4)	(2)
	자가용	10점	8점	6점	4점	2점						

붙임1 보세창고 내부통제시스템(화물관리규정) 가이드라인

□ 제1장 총칙

- (목 적) 관세법 및 화물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원활한 수행 <관련근거> 관세법 제174조 내지 제184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기본방침) 관세 법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사의 기본방침
- □ 제2장 조직 및 책임체계
 - (조 직) 총괄관리, 화물관리, 고객관리, 내부감사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책임자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
 - ① 회사내 보세창고(화물관리) 조직도 ② 지휘(운영) 체계 및 임무
 - (총괄관리) 법규준수관점에서 특허요건 및 보세업무를 총괄 관리

<총괄조직의 구성> ① 총괄조직 및 구성원

<총괄조직의 임무> ① 화물관리규정 관리, ② 종사자(보세사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수립, ③ 특허요건을 유지·향상을 위한 자체 점검, ④ 특허사항 변경, 특허갱신 등에 대한 세관 보고, ⑤ 화물정보관리(보안) 등

○ (화물관리)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화물 반출입 및 기록 관리

<화물관리 조직의 구성> ① 관리조직 및 구성원
<화물관리 조직의 임무> ① 화물의 반출입 신고 및 확인, ② 재고관리,
③기록관리 ④ 보세구역 및 화물 점검, ⑤ 사회안전저해물품 발견시 세관장 보고, ⑥ 출입자 통제 ⑦ 보세창고 운영시스템(WMS) 운영

○ (고객관리) 보세구역을 이용하는 화주 관리

<고객관리 조직의 구성> ① 관리조직 및 구성원 <고객관리 조직의 임무> ① 창고 보관료 안내 및 수납, ② 대고객 물류정보 제공, ③ 고객지원센터 운영, ④ 경비 등의 위탁시 위탁업체 관리 ○ (내부감사) 보세구역 운영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감사, 최고 책임자에게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내부감사 조직의 구성> ① 관리조직 및 구성원
<내부감사 조직의 임무> ① 내부감사의 시기, ②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 ③ 화물정보 보안감사(무단반출 및 정보 조작), ④ 적정한 서류보관, ⑤ 감사 결과의 보고 및 감사지적 이행 관리

□ 제3장 화물관리

- **(반출입관리)** 보세구역에서 화물 반출입시 법령에 근거한 절차
 - ① 반출입 프로세스(세관의 승인사항 확인과 인수도 절차), ② 반출입시 확인 및 징구 서류, ③ 반출입 등 관세법령에 의한 대장관리(세관봉인대 봉인물품 확인 대장, 물품확인대장,견품반출입대장, 내국물품반출입관리대장, 보수작업 관리대장, 환적화물 적출입관리대장,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등), ④ 사회안전 저해물품 발견시 내부 및 세관보고 절차, ⑤ 화물 반출입신고 및 신고시기, ⑥ 물품 인도절차 등, ⑦ 전산(내부) 장애시 업무처리절차
- **(보관관리)** 위험물, 귀중품, 식품류, 냉장(냉동)물품 등 화물 유형별 보관기준, 재고관리, 보관화물에 대한 화물표 부착 등
 - ① 재고관리 방법 및 점검 시기, ② 냉동(냉장), 위험물, 귀중품, 의약품, 동식물, 총기류 등 특수물품의 보관기준 ③ 수입식품과 일반화물 분리보관 절차 ④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구분 보관 절차
- (화물취급) 작업입회, 이상시 세관보고,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반입 예정정보와 실물과의 과부족 확인 등 화물 취급시 처리절차
 - ① 이상화물에 대한 관리절차(품명·중수량 상이물품, 포장 파손물품, 오염 및 누출 물품) ② 체화물품 관리절차(화주통보 등 업무 프로세스) ③ 보수 작업 및 폐기(멸실물품 포함) 물품에 대한 처리절차 ④ 물품의 보관 및 분류 기준 ⑤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절차 ⑥ 견품 반출입 절차

○ (보세사의 임무)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

①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 확인시 입회·감독, ②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③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④ 보세화물 관련 대장의 작성 및 확인(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보수작업관리대장, 환적화물 적출입관리대장,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및 기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 ⑤ 보세사의 등록 및 근무방법, ⑥ 업무대행자의 지정

□ 제4장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 관리

- **(출입자 통제)** 보세구역을 출입하는 인가자 및 비인가자에 대한 관리절차 및 기록관리
 - ① 출입증 패용 등 창고 출입 인가자에 대한 관리, ② 보세창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출입절차, ③ 무단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④ 공무외 출입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 ⑤ 무단출입자에 대한 세관장 보고
- (시설안전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자체 순찰 계획, 과학장비 운영 등
 - ① CCTV, 경보장치, 잠금장치 등 감시장비기준 및 운영절차, ② 무단접근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 차단물, 조명 등 시설기준 및 운영절차, ③ 경비 등을 아웃 소싱할 경우 용역업체 관리계획

□ 제5장 세관보고 등

- (보고 및 위험관리) 보세업무와 관련한 사고, 법령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보고 및 연락체계 구축(내부 보고절차 포함)
 - ①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② 도난ㆍ화재 등 발생, ③ 특허사항의 변경,
 - ④ 다른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른 운영인의 보고
- (서류보존) 관세법 등에 의한 보세화물 관련 대장 보관(2년) 및 관리
- (교 육) 보세구역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위탁) 계획 수립 등
- (규정개정) 화물관리규정 절차 및 시행일, 규정개정시 세관장 보고